

의안번호	제 242 호
의결연월일	2001. 9. 1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8. 30 예산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9. 7

다. 상 정 일 자 : 2001. 9. 8

제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재무과장 : 이 상 원)

가. 제안이유

- 지방제정의 여건변화와 지방제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 경제 희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7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23조제1항 내지 제6항)
 - 일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공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안 제23조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5조제2항)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 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안 제28조제1항)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28조제2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도입함(안 제28조의2)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이동구)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문의 조문별 제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유치를 위하여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와 내부적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